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시행령 제11조의9제1항에 따른 공시 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 공표의 표준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등과 합의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8. 16. ~ 9. 25.)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* 국조실 규제심사 사전협의 결과 ‘규제 비대상’

고용노동부령 제 호
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6조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4. 영 제11조의9제1항에 따른 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 공표 표준서식: 별지 제23호의2서식

부 칙

이 규칙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6조(서식 등) 법 및 영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13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16조(서식 등) ----- -----, 1. ~ 13. (현행과 같음) 14. 영 제11조의9제1항에 따른 <u>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 공표 표준서식: 별지 제23호의 2서식</u> 15. (현행 제14호와 같음)
14. (생략)	

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[별지 제23호의2서식]

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 공표 표준서식

※ 제2쪽과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(3쪽 중 1쪽)

1. 기본사항

회계연도: 년 월 일 ~ 년 월 일			가 조직단위	㉠기업 ㉡사업장 ㉢특정지역 ㉣전국
① 노동조합(또는 산하조직) 명칭		② 조직형태	㉣ 조합형태	㉠단위노조 ㉡지부 ㉢분회 ㉣전국규모 산별단위노조 ㉤연합단체 ㉥총연합단체
③ 사업자등록번호 (고유번호 등)		④ 소속 연합단체 (소속 단위노동조합) 명칭		
⑤ 대표자		⑥ 조합원수		
⑦ 설립일		⑧ 전화번호		
⑨ 소재지		⑩ 전자우편주소		

2. 자산 및 부채현황

(단위: 원)

구분	⑪자산 (=⑫+⑬+⑭+⑮)	⑫현금 및 예금	⑬토지	⑭건물	⑮기타자산	⑯부채
㉠ 총계(=㉡+㉢+㉣+㉤)						
㉡ 일반회계						
㉢ 특별회계						
㉣ 보조금사업회계						
㉤ 수익사업회계						

3. 수입현황

(단위: 원)

구분	⑰수입 총계 (=⑱+⑲)	⑱ 전년도 이월금	⑲당기 수입						
			⑳ 조합비	㉠상금 단체 교부금	㉡하부 조직 부과금	㉢ 후원금	㉣ 타회계 전입금	㉤ 보조금 수입	㉥ 수익 사업 수입
㉠ 총계(=㉡+㉢+㉣+㉤)									
㉡ 일반회계									
㉢ 특별회계									
㉣ 보조금사업회계									
㉤ 수익사업회계									

4. 지출현황

(단위: 원)

구분	㉦ 지출 총계 (=㉧+㉨)	㉧당기 지출						
		㉨일반관리비용			㉩사업수행비용			
		㉪인건비	㉫업무 추진비	㉬기타 운영비	㉭총회 등 대회비	㉮조직 사업비	㉯정책 사업비	㉰교육· 홍보 사업비
㉠ 총계(=㉡+㉢+㉣+㉤)								
㉡ 일반회계								
㉢ 특별회계								
㉣ 보조금사업회계								
㉤ 수익사업회계								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4. 지출현황 (계속)

(단위: 원)

구분	㉔당기 지출(계속)						㉕차년도 이월금
	㉓사업수행비용(계속)			㉑상급 단체 부과금	㉒하부 조직 교부금	㉑타회계 전출금	㉒기타 지출
㉓총계(=b)+(c)+(d)+(e)							
㉓일반회계							
㉓특별회계							
㉓보조금사업회계							
㉓수익사업회계							

5. 확인란

위 결산결과 정보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결산에 관한 사항, 기금에 관한 사항 등과 그 내용이 동일함을 확인합니다.

대표자 : _____ 확인일자 : _____

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」 시행령 제11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의 결산결과를 공표합니다.

_____ 년 _____ 월 _____ 일

노동조합(또는 산하조직)명

작성방법

1. 기본사항

가. 회계연도는 작성 시점의 연도가 아닌 공표하고자 하는 결산결과의 회계연도를 적습니다.

나. "㉑노동조합(또는 산하조직) 명칭"란은 공표하고자 하는 주체가 노동조합인 경우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11조제1호에 따른 노동조합의 명칭을 적고, 공표하고자 하는 주체가 산하조직인 경우 산하조직의 명칭을 적습니다.

다. "㉓소속 연합단체(소속 단위노동조합) 명칭"란은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11조제5호에 따른 산업별 연합단체, 총연합단체 명칭을 적고, 지부·분회의 경우 소속된 단위노동조합의 명칭을 함께 적습니다.

라. "㉒조합원수"란은 작성 시점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조합원수를 적습니다. 작성 시점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조합원수를 산정할 수 없는 신설 노조 등의 경우 작성 시점 기준 조합원수를 적습니다.

마. "㉑설립일"란은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 상 노동조합 설립일을 적습니다.

바. "㉓소재지"란은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 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.

2. 자산 및 부채 현황

가. "㉑자산-㉑부채"란은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의 자산 및 부채가액을 일반회계, 특별회계, 보조금사업회계,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
※ "일반회계"란 조합비, 상급단체 교부금, 하부조직 부과금 등으로 운영하는 회계를 말합니다.

※ "특별회계"란 정기에금 등 적립금 회계, 기금회계(예: 정의기금), 일반적인 조합비 외의 특별 조합비 등 일반회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회계를 말합니다. 여러 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특별회계별로 적습니다.

※ "보조금사업회계"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과 같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회계를 말합니다. 여러 개의 보조금사업회계를 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보조금사업회계별로 적습니다.

※ "수익사업회계"는 임대사업, 영리시설 운영사업 등 법인에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의 회계를 말합니다.

나. "㉑자산"이란 현금, 당기에금, 장기에금, 임대보증금, 토지, 건물 등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을 말합니다.

다. "㉒현금 및 예금"란은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(보통예금, 당좌예금, 취득 시 만기가 3개월인 금융상품 등)과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고 있는 정기에금의 가액을 적습니다. 정기에금 등에서 발생하는 미수이자(=㉒현금 및 예금)란이 아닌 "㉑기타자산"란에 적습니다.

라. "㉑기타자산"란은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이 가지고 있는 정기적금, 펀드상품, 저축성 보험상품 등 기타 금융자산과 조합비 미수금, 매출채권, 미수이자, 미수임대료, 선금금 등 ㉒부터 ㉑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을 적습니다.

마. "㉑부채"란은 미지급금, 임차보증금, 예수금,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이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이 유출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를 말합니다.

작성방법

3. 수입현황(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)

가. "㉒전년도 이월금"란은 회계별로 전기 말 현금 및 예금의 잔액을 적습니다.

나. "㉒조합비"란은 규약에 따라 조합원이 단위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에 직접 납부한 조합비를 적습니다.

다. "㉑상급단체 교부금"란은 산하조직이 단위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받은 교부금, 단위노동조합이 연합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교부금 등 상급단체로부터 받은 교부금 등을 적습니다.

라. "㉒하부조직 부과금"란은 단위노동조합이 산하조직 등으로부터 받은 부과금, 연합단체가 단위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받은 부과금 등 가맹조직, 산하조직 등으로부터 받은 부과금(예: 가맹비, 의무금) 등을 적습니다.

마. "㉒후원금"란은 조합원이 아닌 개인, 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적습니다.

바. "㉑타회계 전입금"란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 간의 전입으로 인한 수입 금액을 적으며, 지출현황의 "타회계 전출금" 지출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.

사. "㉑보조금 수입"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과 같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적습니다.

아. "㉑수익사업 수입"란은 임대사업, 영리시설 운영사업 등 법인에 납세의무가 있는 수익사업 수입 총액을 적습니다.

자. "㉑기타수입"란은 ㉒부터 ㉑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을 적습니다.

4. 지출현황(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)

일반회계, 특별회계, 보조금사업회계, 수익사업회계의 지출은 그 성격에 따라 ㉒부터 ㉑까지 분류하여 적습니다.

가. "㉑일반관리비용"은 사무국 조직 운영과 관련한 비용을 말하고, "㉑사업수행비용"은 노동조합 고유의 활동 또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말합니다.

나. "㉑인건비"란은 임직원 급여, 수당, 퇴직금, 사회보험료, 복리후생비 등 인력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적습니다.

다. "㉑업무추진비"란은 임·직원의 직급·직책 등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, 업무협의 등 대외적인 각종 행사 및 직무수행에 사용되는 경비 등 사무국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적습니다.

라. "㉑기타운영비"란은 "㉑인건비" 및 "㉑업무추진비" 외에 예비, 교통비, 통신비, 인쇄비, 사무용품비, 지급수수료 등 사무국 조직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적습니다.

마. "㉑총회 등 대회비"란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총회, 대의원회, 집행위원회 등 회의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습니다.

바. "㉑조직사업비"란은 신규 조합원 가입, 지부·분회 등 산하조직 신설·확대·변경 등의 조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습니다.

사. "㉑정책사업비"란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 및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정책 의제 개발, 제도개선 연구 등 노동조합의 정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습니다.

아. "㉑교육·홍보사업비"란은 신규 조합원 교육, 간부 교육 등 교육사업과 영상·홍보를 게시, 유인물 부착 등 홍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습니다.

자. "㉑정의사업비"란은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교섭·쟁의·집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및 쟁의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대비용 및 지원금 등을 적습니다.

차. "㉑기타사업비"란은 사업비 중에서 ㉒부터 ㉑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을 적습니다.

카. "㉑상급단체 부과금"란은 산하조직이 단위노동조합 등에 납부하는 부과금, 단위노동조합이 연합단체 등에 납부하는 부과금 등 상급단체에 납부한 부과금(예: 가맹비, 의무금) 등을 적습니다.

타. "㉒하부조직 교부금"란은 단위노동조합이 산하조직 등에 배분하는 교부금, 연합단체가 단위노동조합 등에 배분하는 교부금 등 하부조직에 배분하는 교부금 등을 적습니다.

파. "㉑타회계 전출금"란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 간의 전출로 인한 지출 금액을 적으며, 수입현황의 "타회계 전입금" 수입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.

하. "㉑기타 지출"란은 ㉒부터 ㉑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지출을 적습니다.

거. "㉑차년도 이월금"란은 "㉑수입총계"에서 "㉑당기 지출"을 차감한 금액입니다.